

#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

의안 번호	138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7. 9. 6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직영중인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인 자율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는 기능과 역량을 갖추고자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법인설립 계획에 대하여 중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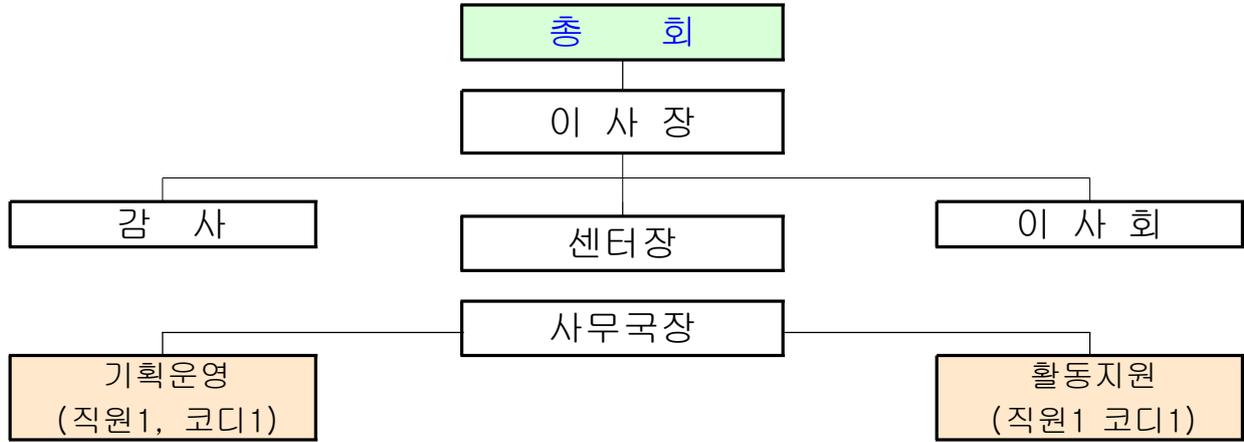
## 2. 주요골자

### 가. 설립개요

- 1) 명 칭: (가칭)사단법인 울산 중구자원봉사센터
- 2) 시 기: 2018. 1월(예정)
- 3) 형태 및 성격: 민법법인(민법 제32조), 비영리사단법인
- 4) 장 소: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99(중앙동행정복지센터)
- 5) 센터조직: 6명(센터장, 사무국장, 직원 2, 코디 2)
- 6) 이 사 회: 이사장 포함 5명 이상 15명 이하
- 7) 주요사업
  - 가) 지역의 기관·단체와의 상시협력체계 구축
  - 나)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·홍보
  - 다)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
  - 라)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시범운영
  - 마)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 - 바)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나. 조직구성

○ 조직도(안)



○ 조직 구성(안)

구분	자격 및 구성	인원(명)	선임절차	권한과 책임
설립자	지방자치단체장	1	공직선거	이사 임명, 예산 및 사업 승인, 관리 감독
이사장	이사	1	이사회에서 호선	이사회와 총회의 의장, 센터장 및 감사의 임명
센터장	이사(당연직)	1	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	센터를 대표, 업무총괄 및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
이사	공무원,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 수요자	5~1	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	총회의 위임을 받아 예산, 인사, 사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
감사	주무관청 부서장, 감사전문가 등	2	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	이사의 사무집행을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
총회(회원)	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	제한 없음	이사회에서 승인	법인의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의결
임원추천위원회	이사 및 외부인사	5~6	이사회에서 선임	임원을 임명권자에게 추천

※ 사단법인은 출연금 없어도 되지만 회원의 월회비는 정하여야 함

○ 회 원

- 정 회 원 : 센터의 임원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및 기관·단체의 대표

※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 및 의결권 행사

- 일반회원 :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개인, 법인·단체의 대표자

※ 의결권 없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

다. 추진계획

① 법인설립 계획수립	• 법인 설립방향 설정	'17. 8~9월
↓		의회일정 조 율
② 법인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·운영	※ 의회 업무보고(9월경) • 발기인 구성(5명 이상 15명 이하) • 임원 선임(안), 정관(안) 및 운영규정(안)마련	'17. 9월
↓		
③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	•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• 이사회 : 이사장 선출, 센터 운영 규정 심의	'17. 10월
↓		
④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	• 허가(시 자치행정과) 및 등기(관할 등기소) • 사업자 등록 : 관할 세무서	'17. 11월
↓		
⑤ 직원채용 및 센터개소 준비	• 채용인원 : 6명(센터장, 사무국장, 팀원2, 코디2) • 방법 : 공모 및 특별임용 • 개소준비 : 사무실 비품 구입, 현판 등	'17. 12월
↓		
⑥ 법인출범	• 법인출범(현 사무실) 및 대외 홍보	'18. 1월

3. 근거법규

가. 「민법」 제32조

나.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

다. 「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1조

라.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1조

마. 「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3조

# 근거법규

## 「민법」

제32조 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##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
제19조 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.

## 「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

제11조 (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.

④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「민법」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.

⑦ 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 <개정 2008· 6·30>

##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

제11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

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 할 수 있다.

④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자원봉사센터는 「민법」에서 정한 정관을 작성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⑥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.

### 「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

제3조(설립허가의 신청)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(이하 "설립발기인"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, 경찰청장 또는 소방방재청장(이하 "주무관청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1. 설립발기인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) 1부
2.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
3. 재산목록(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)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(出捐)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4.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
5.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·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
6. 창립총회 회의록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) 1부

<b>의안 번호</b>	<b>1388</b>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】 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9. 6.(목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8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9. 18.(월)

## 2. 제안설명 요지(복지경제국장 조수관)

### 가. 제안이유

직영중인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인 자율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는 기능과 역량을 갖추고자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법인설립 계획에 대하여 중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1. 명 칭: (가칭)사단법인 울산 중구자원봉사센터
2. 설립시기: 2018. 1월(예정)
3. 형태 및 성격: 법인(민법 제32조), 비영리사단법인
4. 장 소: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99(중앙동행정복지센터)
5. 센터조직: 6명(센터장, 사무국장, 직원 2, 코디 2)
6. 이 사 회: 이사장 포함 5명 이상 15명 이하
7. 주요사업
  - 지역의 기관·단체와의 상시협력체계 구축
  -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·홍보
  -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
  -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시범운영
  -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 -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#### 다. 근거법규

1. 「민법」 제32조
2.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
3. 「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1조
4.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1조
5. 「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3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원기)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하였고,
- 「민법」 제32조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규정을, 「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1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1조에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.
-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민과 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자율성과 공익성,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